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배·김창국·박상증 110-734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87 인국빌딩 5층 전화: 723-5300 / 팩스: 723-5055
천리안호텔 PSPD, 뉴누리유-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net.org/~pspd/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신 참여연대 (담당 시민감시국장 김형완 723-5302)
제목 검사수뢰의혹사건에 대한 엄정수사 및 처벌추구의 건
날짜 1998. 4. 25.(총 1 쪽)

수뢰검사 처벌 촉구서

“검사의 수뢰의혹, 엄정수사로 의법조치해야”

1998년 4월 25일 (토) 참여연대

1. 의정부판사수뢰사건에 이어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충격을 던져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대구고검의 임연섭검사가 지난 92년 성남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할 때 고소인으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검사 본인도 “차용증서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렸다가 4년 만에 갚았을 뿐”이라고 주장해 ‘문제있는 돈’을 받았음을 일부 시인하였다.
2.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해당사건의 피고소인이 임검사에 의해 당시 구속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있는 돈’으로 인해 구속이라는 검찰처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또 다른 의혹마저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차용증 없이 무이자로 빌렸다는 임검사의 주장도 납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상식적으로 차용이라는 것은 채권채무의 관계와 액수를 명확하게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적정 이자의 지급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검사의 경우 차용증도 없이 무이자로 차용을 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사실상의 공여행위랄 수는 있어도 채무행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설혹 채무상환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만큼의 대가와 편의가 임검사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금품수수와 수뢰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3. 우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단순히 자체적인 경위조사 차원에서 조사할 것이 아니라 정식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히고, 혐의가 드러나는 즉시 의법조치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검사가 사건과 관련하여 수뢰를 하였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추상 같아야 할 법의 잣대가 일관성 없이 흔들릴 때, 무너지는 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의 공권력에 대한 신뢰라는 점을 검찰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 끝.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종배 · 김창국 · 박상증